

# 國產電算組織의 活用을 위한 規定案

- ◇·· 經濟長官會議에서 科技處는 電子計算組織導入 利用에 관··◇
- ◇··한 規定案을 의결했다. 이 규정안은 電算組織導入에 관한··◇
- ◇··기준 설정과 아울러 中型 이상(공공기관은 小型이상)의 전··◇
- ◇··산조직을 導入 할때는 電子計算組織委員會에 審議를 거쳐··◇
- ◇··科技處長官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는 앞으로 國產 電算··◇
- ◇··組織의 活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業界를 위해 全文을 ...◇
- ◇··소개한다. ...◇

## 電子計算組織導入利用에 관한 規定案

제 1 조(目的) 이 승은 科學技術振興法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電子計算조직(이하 「電算 조직」이라 한다)의 導入利用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必要한 사항을 규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승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電算組織」이라 함은 입력·출력·연산·제어 및 기억의 機能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情報資料를 수학적·논리적으로 처리하는 機械組織(하드웨어)과 同機械組織의 効率的 動作 및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집합인 이용기술조직(소프트웨어)을 말한다.

2. 「電算組織關聯機器」라 함은 전산조직에 직접 관련되는 入出力裝置, 보조기억장치, 단말장치와 보조기기 등을 말한다.

3. 「電算組織의 導入」이라 함은 전산조직 공급자로부터 電算組織 및 관련기기를 구입, 임차, (施設대여산업 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를 포함한다) 수증하여 設置하는 다음 각항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電算組織 1대 이상을 기존 전산조직에 부가

하여 設置하는 추가도입

가. 電算組織 또는 관련기기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신규도입

다. 기존 電算組織을 다른 전산조직으로 바꾸어 設置하는 대체도입

라. 기존 電算組織의 機能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기억장치 또는 관련기기를 設置하는 증설도입.

4.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國家機關 및 지방자치단체

나. 政府投資機關管理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資本金, 기금 또는 경비의 50% 이상을 출자·출연·보조하는 機關 및 団体

라.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設立된 特殊法人

제 3 조(電算組織의 분류) 電算組織은 초대형, 대형, 중형, 소형, 초소형으로 구분하며 구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 4 조(電算組織導入 계획승인) ① 중형이상(공공기관은 소형이상)의 電算組織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科學技術處長官의 도입계획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② 科學技術處長官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導入計劃承認에 앞서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電子計算組織委員會 심의를 거쳐야 하며 電算組織의 機械組織 및 關聯기기의 국산대체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미리 商工部長官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5 조 (전산조직 도입계획 검토기준) ① 과학기술처장관이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조직 도입계획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전산조직을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 6 호 및 제 7 호의 사항에 대하여서만 검토한다.

1. 필요성 및 경제성
2. 사전준비 및 요원확보 여부
3. 기존 전산조직과의 공동활용 가능여부
4. 기종선정의 적정성
5. 국산대체 가능 여부
6. 정비보수체제 및 계약내용의 합리성
7. 표준화방침에의 부합 여부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전산조직을 도입하는 경우, 제 1 항 제 1 호내지 제 3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총무처장관의 설치협의로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제 6 조 (표준화) 과학기술처장관은 정보자료의 호환성 확보, 정보유통망의 구축 등 전산조직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전산조직의 표준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7 조 (국산 전산조직의 활용) 과학 기술처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산전산조직 및 관련기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동요청을 받은 기관은 가격과 성능면에서 현저히 불리하지 않는 한 국산 전산조직 및 관련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8 조 (전산조직 공급자의 신고 등) ① 외국에서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자(시설대여 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는 제외한다)는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처장관은 전산조직의 활용도 제고와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전산조직 공급자에 대하여 필

요한 기술인력 및 부품 등의 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전자계산조직 위원회) ① 전산조직의 도입 및 이용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에 전자계산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산조직의 이용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종합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전산조직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전산조직 인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전산조직 도입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5. 기타 과학기술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 2 항 제 4 호의 심의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에 준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 10 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 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과학기술처 차관이 되고 위원은 경제기획원, 내무부, 재무부, 문교부, 상공부, 체신부 총무처 및 과학기술처의 3 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장관이 지명하는 자와 전산조직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1 조 (위원장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2 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와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13 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안전대책) 과학기술처장관은 전산조직의 이용보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대책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전산조직 사용자 및 공급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제15조 (실태조사) 과학기술처장관은 전산조직의 관리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산조직 사용자 및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총무처장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전산조직 이용실태
2. 전산조직 요원현황
3. 전산업무 개발현황
4. 정비보수 지원체제
5. 전산조직표준화 실시현황
6. 국산기기 활용실태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 (업무협조) 과학기술처장관과 상공부장관은 전산조직의 효율적인 도입관리 및 국산화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조한다.

1. 전산조직 국산화 계획의 수립시행
2. 전산조직 공급자 및 국산업체현황
3. 전산조직 수출입관리
4. 전산조직 이용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5. 기타 정보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제17조 (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법령의 폐지) 이 영의 시행일로부터 전산계산조직개발조정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8601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電子計算組織分類基準

(單位: US 弗)

區 分	超大型	大 型	中 型	小 型	超 小 型
販賣價格(千弗)	1,500이상	1,500~ 700	700~ 300	300~ 100	100미만
月 賃 借 料	35,000이상	35,000~15,000	15,000~ 7,000	7,000~ 2,000	2,000미만

註: 1. 販賣價格은 FOB 價格을 기준으로 한다.

2. 月賃賃料(整備料포함)는 1년계약시 賃借料를 기준으로 한다.